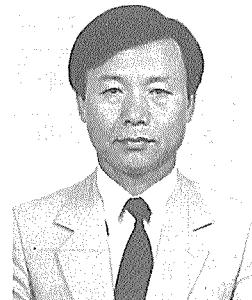


# 주요 선진국의 영업비밀 보호제도(Ⅱ)



황 의 창  
특허청 상표심사과장

## -목 차-

### 1. 머리말

1. 영업비밀의 개념
2. 영업비밀 침해 동향
3. 영업비밀 관리실태

### 2. 영업비밀의 국제 규범

#### 3. 주요 선진국의 영업비밀 보호 제도

- 1) 한 국
- 2) 미 국
- 3) 독 일
- 4) 일 본
- 5) 영 국
- 6) 스위스
- 7) 프랑스

### 4. 맷 음 말

### 3. 주요선진국의 영업비밀 보호제도

영업비밀 보호제도를 도입, 운용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그 보호 법체제를 달리하고 있다.

즉, 영업비밀을 성문법(일반법: 민법, 상법, 형법, 특별법: 통일 트레이드 시크릿법, 부정 경쟁방지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나라와 불문법(판례법, 관습법, 조리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

이와 같은 보호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 수단이다.

즉,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인정 여부이고 그 다음이 형사처벌의 유무이다.

오늘날 영업비밀 보호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는 어떤 형태로든 피해자의 금지청구와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묻고 있다.

서구 선진국중 가장 강력한 영업비밀보호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미국은 판례법과 통일 트레이드 시크릿법, 주법 및 형법 등 다양한 법제도를 통해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있다.

또한 영업비밀이 침해되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은 물론이지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해 금지나 예방도 함께 청구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있다.

그러나 형사처벌은 일부 주에 서만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외 영국이 판례법과 민법, 형법, 부정경쟁방지법과 그 판례가 보호제도의 기반이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스위스, 오스트리아 및 일본은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영업비밀 보호 제도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에서의 영업비밀 보호법은 오랫동안 축적된 법원의 판례가 제도적 기반이 되고 있다.

따라서 축적된 판례가 가장 중요한 영업비밀보호의 기준과 원칙이 된다.

1979년 제정한 통일 트레이드 시크릿법이 각주의 영업비밀 보호법 제정에 중요한 모델이 되어 왔으나 아직도 구체법위와 절차가 각 주마다 다른 경우가 있다.

예를들면 통일 트레이드 시크릿법은 기본적으로 민사적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일부 주에서는 형사적 처벌제도도 채택하고 있다.

### 주요 선진국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비교

국 명	보호법제	보 호 대 상		
		금지	손해배상	형벌
미 국	통일영업비밀법 판례법 형법 주법	인정	인정	일부주
영 국	판례법 형법	"	"	절도죄, 횡령죄
프 랑 스	민법(부정경쟁에 관한 판례법) 형법	"	"	제조비밀
독 일	민법(부정경쟁방 지법 및 그 판례) 형법	"	"	인정
이탈리아	판습법	"	"	"
카나다	판례법 형법	"	"	절도죄, 횡령죄
스위스	부정경쟁방지법	"	"	인정
오스트리아	"	"	"	"
일 본	부정경쟁방지법 형법	"	"	제한적 인정
한 국				

이에 반해 독일과 스위스 등 유럽에서는 별도의 영업비밀 보호법을 제정하지 않고 부정경쟁 방지법이나 판례에 의하여 부당한 비밀의 침해를 엄격하게 규제하여 왔다.

특히 민사상의 손해배상보다는 형사적 규제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일본은 최근까지 영업비밀을 민법, 상법, 형법 등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보호하여 오다가 1991년 6월 15일부터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규제제도를 채택하여 기술과 경영에 관련된 모든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까지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영업비

밀 보호규정을 갖지 않고 민법, 상법, 형법 등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보호되어 오다가 1992년 12월 15일부터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내에 영업비밀 보호규정을 신설하여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 청구권 등 민사적 구제는 물론 형사적 처벌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으로 서구 선진국이나 일본 등과 같은 수준의 영업비밀의 법적보호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확립을 꾀하였다.

#### 1) 한국

##### ① 가. 배경

최근 전자, 통신, 생명공학, 제약 등 첨단기술분야를 중심으로 경쟁업체간에 치열한 경쟁을 하

면서 매수 등에 의한 부정스카우트 전자통신장비의 이용, 거래업체 위장, 고객 또는 사찰단원 가장, 위장취업 등 부정한 수단에 의해 막대한 연구개발비의 투자와 많은 지적창작 노력 및 오랜 시간을 들여 창출한 지적재산인 영업비밀을 정당한 대가의 지불 없이 무단사용하거나 도용하고 있는 사례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기술개발이나 기술혁신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술상품의 수명주기가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큰 자체기술 개발을 기피하고 유리한 도용이나 모방쪽을 택하는 데에서 기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십만장 분량의 정보자료를 단 한장의 디스켓에 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손쉽게 훔쳐 사용할 수가 있는 점도 영업비밀의 침해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경쟁업체의 성공기술에 편승하려는 무임승차의 풍조가 우리업체에 만연될 경우 진정한 국가 산업경제의 발전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영업비밀이 적절하게 보호되지 않을 경우 연구개발비 등 상당한 댓가를 치른 기업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서게 되어 결국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므로 기업간의 건전한 경쟁질서 확립을 통한 연구개발의 촉진과 선진 공업국의 첨단기술 이전을 촉진함은 물론 불필요한 대외통상 마찰의 요인을 해소하고 나아가서는 영업비밀에 대한 GATT

UR/T-rips 협정 타결 등 국제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영업비밀의 관리능력과 법적 구제 제도의 운용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1992년 12월 15일부터 영업비밀보호 규정을 신설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의 시행에 들어갔다.

#### 나. 영업비밀 보호규정의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영업비밀의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비공정 또는 신규성)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비밀관리 또는 비밀성)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유용성 또는 경제성)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소위 산업스파이가 노리는 기술상, 경영상의 정보는 모두 영업비밀로 보아도 좋을 것인 바 설계방법, 설계도면, 공정도, 실험데이터, 성분원료의 배합비, 신제품 제조·판매계획, 고객명부, 원료구입처 리스트, 연구보고서 등이 위의 영업비밀의 요건인 비공지성과 비밀관리, 유용성 등을 충족한 경우에 이 법에 의한 영업비밀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법에서는 영업비밀 보호수단의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6가지의 행위 유형으로 한정 열거하고 있고 이외의 영업비밀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민법, 상법, 형법 등 일반법의 구제 수단에 맡기고 있다.

이 법에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6가지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와 계약위반 등의 법 원칙에 따른 부정취득행위 등(제2조 제3호 가목)과 비밀유지의무위반 행위(동조 제3호 라목)의 2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2가지 유형의 기본법 침해행위에 따르는 사후적 관여 행위를 각각 2가지씩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① 절취, 기망, 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와 ② 계약 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기본적인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사후적 관여 행위로 ③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고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④ 영업비밀이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의 의무위반에 의하여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

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와 ⑥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의 의무위반에 의하여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법적규제 수단은 영업비밀 보유자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지 청구 등을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서비스의 제거 기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이와같은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외에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가한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법원은 영업비밀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가 그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안에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위의 민사적 구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선의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이상의 민사적 구제수단 외에 형사처벌로서 기업체의 협직 임원 또는 직원이 그 기업 특유의 생산기술에 관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이러한 누설죄에 대한 공소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로 하고 있다.

## 2) 미국

### 가. 배경

19세기경 영국으로부터 확립된 영업비밀 보호제도를 중심으로 각 주마다 판례에 의해 영업비밀이 보호되어 왔다.

오늘날의 “통일 트레이드 시크리트법 (Uniform trade secrets Act)”에서의 트레이드 시크리트란 용어는 영업비밀과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트레이드 시크리트에 대한 부정행위 (misappropriation)에 대해서는 민사적 보호가 중심이 되어 불법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각 주법상 보호가 가능했으나 주마다 그 내용이 달랐다.

그러나 1939년에 미국 법률협회가 각 주의 판례원칙을 검토, 분석해서 조문형식으로 기재한 제1차 불법행위법 리스테이트먼트 (restatement)의 제757조 내지 제759조에서 정리되고 1979년에는 주간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통일주법위원회

전국회의에서 모델법 성격을 띤 통일 트레이드 시크리트법을 (Uniform Trade Secrets Act : UTSA) 제정하여 1991년 3월 현재 35개 주에서 이를 모델로 성문화한 트레이드 시크리트주법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미국의 영업비밀은 주의회의 특별입법이 없이 주법원의 판례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주와 통일 트레이드 시크리트법을 모델로 한 주 제정법률로 보호하고 있는 주가 있다.

따라서 판례법에 의하여 규율하고 있는 주의 영업비밀 보호제도를 알기 위해서는 그 주의 판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즉, 영업비밀이 제정법에 의해 통일적으로 적용, 보호되는 것이 아니고 주마다의 축적된 판례법을 기초로 사건이 제기될 때마다 구제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법원이 적용하고 있는 법이론은 재산이론 (Property theory)과 신뢰관계이론 (confidential relationship theory)이었다.

어느 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문제는 매사건의 사실관계에 의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두 법이론과 함께 적용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통일 트레이드 시크리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의 미국의 영업비밀과 현재 판례법에 의존하고 있는 주의 영업비밀은 상당히 신축적이고 또 다양하게 보호되어 왔던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민사상 구제방법인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

의 경우 금지기간을 법원마다 서로 다르게 판결하고 있었다.

즉, 영구금지, 원고의 제품에 내장되어 있는 정보를 분해하여 파악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복제 공법의 기간), 경쟁기술개발에 소요되는 기간, 또는 비밀의 정보가 공지되기 까지의 기간 등 제각기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각 주마다 주판례에 의한 영업비밀 보호가 합중국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헌성 문제가 대두되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1974년에 각주의 판례법에 의한 영업비밀보호는 연방의 특허정책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서 주법에 대한 합헌성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합헌성 논의는 결국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한 통일법 추진을 자극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통일법 추진의 직접동기는 각주의 영업비밀 보호규율이 서로 달라 각 주간의 거래에서 발생되는 여러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미국의 연방헌법에는 합중국헌법 제8절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안은 주법의 규제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영업비밀 보호는 주법으로 규율되어야 할 대상이다.

그래서 각 주마다 그 주의 실정에 맞는 판례법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보호하다 보니까 적용하는 판례법이 서로 다른데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주로 상사법 분야를 중심으로 통일하려는 움직임이 있게 되었다.

이를 위해 설치된 통일주법 위원회 전국회의는 통일입법안을 만들어 1979년 8월 9일 각주에 이를 모델로 한 주법의 제정을 권고하기에 이르렀다.

#### 나. 통일 트레이드 시크릿법

이법의 주안은 트레이드 시크릿의 침해행위에 대한 법적구제로서 민사상의 금지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등을 규정하고 종래의 판례를 근거로 하여 트레이드 시크릿 보호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영업비밀을 공개 또는 사용에 의해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타인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정당한 수단에 의해서는 용이하게 알아질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 또는 잠재적으로 독자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유지를 위해 당해 상황 하에서 합리적인 노력이 가해진 제법 내지 공식, 패턴(양식 내지 정형), 데이터의 편집(집성), 프로그램, 도구, 고안, 제조방법, 기술 또는 공정 등을 포함하는 모든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제1조 제4항)

따라서, 이 법에 의한 영업비밀의 요건을 보면

첫째, 그 정보가 공개 또는 사용에 의해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타인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신규성”이다.

이는 특허법상의 사회의 기술 수준과의 비교관점에서 고찰한다는 성질 보다는 당해 정보가 정당한 수단에 의해 쉽게 입수하기가

곤란하다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특허법적 의미의 신규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최소한의 신규성은 요구함으로서 당해정보가 비밀로 유지할만한 경제적가치의 지표가 되는 것이다.

둘째, 그 정보가 정당한 수단을 사용해서는 쉽게 얻을 수 없는 현실적 또는 잠재적으로 독자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경제성”이다.

이는 그 정보의 사용에 의하여 경제적가치를 얻을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수단으로는 용이하게 입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지는 경쟁상의 가치를 말한다.

셋째, 그 정보의 비밀유지를 위해 당해 상황하에서 합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비밀성”이다.

이상과 같이 미국의 영업비밀보호제도 하에서의 영업비밀은 신규성, 경제성, 비밀성 등 3가지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이상과 같은 영업비밀을 절도, 매수 등의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이를 사용 또는 공개하거나 비밀보호 의무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으로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당해 영업비밀을 사용 또는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하여 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 등의 민사적 구제를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절도죄, 장물이송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한 처벌도 받게된다.

##### (1)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

통일 트레이드 시크릿법에서는 타인의 영업비밀을 절도, 매수 등에 의하거나 비밀유지의무위반 등의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취득, 사용, 공개하거나 그 점을 알면서 또는 과실로 알지 못하고 이를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하는 경우 이를 침해행위로 인정하고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침해행위 금지 청구권 및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침해행위 그 자체가 절도죄 또는 장물 이송죄 등 형사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이를 행위유형별로 살펴본다.

첫째, 당해 영업비밀이 절도, 매수, 부실표시, 전자장치 이용 기타 스파이 행위 등에 의하여 타인이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둘째, 당해 영업비밀이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취득된 것임을 알고 있는 자 또 알 이유가 있는 자가 그 부정취득한 타인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셋째, 영업비밀 유지의무나 사용제한 의무가 부과된 상황하에서 비밀유지 의무 등을 위반하여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넷째, 영업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에 의하여 공개된 영업비밀임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하거나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다섯째, 자신의 지위의 실질적 변동전에 당해 영업비밀을 선의로 취득한 후 타인의 영업비밀임을 알고도 이를 사용 또는 공개하

## 는 행위

### (2)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구제

#### (가) 민사적 구제

##### ○ 금지청구권

이 금지청구권은 영업비밀의 특성상 비밀보호를 위한 가장 적합하고도 강력한 구제수단이고 후술하는 손해배상 등의 구제수단은 이미 영업비밀 침해로 인하여 비밀로서의 정보적 가치가 없어진 후의 손실에 대한 금전적 보전에 불과하다.

이와 같은 금지명령은 법원이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하도록 하는 부작위 명령으로서 이 금지명령에 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하면 법정 모욕죄가 성립된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금지청구는 현재 영업비밀이 침해되고 있거나 앞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금지청구에 의해 법원의 명령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하여 합당한 로얄티를 지불하고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예외적인 상황이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기 전에 금지명령을 불공평하게 하는 중요하고도 불이익한 지위의 변동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또한 적절한 상황에서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행위를 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금지청구는 자칫 남용될 경우 국가산업발전에 큰 저해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행사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경우에도 그 금지기간은 매우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침해자가 경쟁상의 우위를 지킬 수 있는 선도기간 (leading period)이나 합리적으로 타인의 상품을 분해하여 내재되어 있는 정보를 축출하여 상품화하는 기간 복제공법 (reverse engineering)기간 또는 독자적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만큼이 적절하다고 미국의 판례가 판시하고 있다.

##### ○ 손해배상 청구권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실질적인 재산상의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고의 또는 악의에 의한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2배를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정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손해배상에는 영업비밀 침해로 인하여 입은 현실적 손실외에 이 손실에 산정되지 않은 부당이득 부분도 손해배상액에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다.

##### ○ 로얄티의 지급명령

기타 손해배상 대신에 적절한 로얄티의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위의 제소기한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년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상 거래 관계에 의한 구제조치가 있거나 민사상 다른 형태의 구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법의 적용을 배제하

고 있다.

이상의 청구소송절차에 대하여 「통일 트레이드 시크릿법」은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즉, 법원은 문제된 영업비밀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호한다.

그 합리적인 방법이란?

첫째, 공개청구에 대한 보전명령 (Protective order)

둘째, 비공개 심리

셋째, 소송기록의 봉인

넷째, 법원의 승인없이 소송판례자에게 문제된 영업비밀의 공개금지

다섯째, 소송기록의 비밀관리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통일 트레이드 시크릿법은 다른 통일법안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각주에서 성문화된 법규법의 표본을 제시하고 있는 성격이 강하며 실제법 운용과 영업비밀의 보호형태는 법원의 판례를 분석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미국의 영업비밀의 보호제도는 통일 트레이드 시크릿법을 기본으로 각 법원의 판례에 따라 운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나) 형사적 구제

1979년 민사적 구제에 중점을 둔 통일 트레이드 시크릿법의 제정, 시행과 때를 맞추어 영업비밀 침해 행위자를 형사처벌하기 위한 주법이 정비되기 시작하였다.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각 주의 형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영업비밀 절도죄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둘째, 영업비밀 절도죄를 따로 두지 않고 일반 절도죄에 포함시키고 있는 경우

셋째, 영업비밀 절도죄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등이다.

위의 두가지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유체물에 화체된 영업비밀 만을 처벌하는 경우와 유체물, 무체물(기억 속에 있는 영업비밀) 구분없이 모두 영업비밀 절도죄로 처벌하는 경우

둘째, 과학기술 정보에 한정하는 경우와 영업활동에 관한 비기술 정보도 포함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와같이 영업비밀 절도죄의 처벌이외에 컴퓨터 관계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둔 주의 형법도 있다.

#### ① 주형법

○ 영업비밀의 절도죄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 주형법

콜로라도, 플로리다, 매사추세츠, 미시간, 뉴멕시코, 노스캐롤라이나, 오클라호마, 펜실베니아, 테네시, 텍사스, 베지니아, 위스콘신, 캘리포니아, 조지아, 네브라스카, 뉴욕, 오하이오주 등이다.

이중 적용대상 범위가 가장 넓은 “콜로라도주”의 형법 일부를 살펴보면

첫째, 침해행위로 타인의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또는 타인의 사용에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절취하는 경우와 영업비밀을 표시한 물품을 복사하거나 복사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영업비밀의 절도로 간주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제18조-4-408 영업비밀의 절도-형벌)

둘째, 보호대상으로 과학기술 정보 뿐만 아니라 판매, 경영 등 영업활동에 관한 정보까지도 영업비밀로 정의하고 있는 유체물 뿐만 아니라 무체물 즉, 기억 속에 있는 영업비밀까지도 형법상의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 영업비밀의 절도죄를 따로 두지 않고 일반절도죄에 포함시키고 있는 주형법

메릴랜드, 코네티컷, 뉴저지주, 일리노이, 인디애나 등이다.

이중 뉴저지주의 형법의 일부를 살펴보면 1979년 통일 트레이드 시크릿법 제정, 시행과 때를 맞추어 그동안 영업비밀의 절도죄를 특별히 인정하고 있는 형법을 폐지하고 1978년 영업비밀의 절도죄를 일반 절도죄에 포함시키는 새로운 형법을 제정하여 1979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대상은 과학적 기술에 관련된 영업비밀의 절도만을 대상으로 하여 절도죄의 등급을 규정하고 있다.

뉴저지주의 형법에서는 영업비밀의 정의를 비밀이면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모든 과학기술적 정보, 디자인, 프로세스, 수속, 양식 개량 등으로서 영업비밀 보유자가 한정된 목적을 위해 영업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가 입수하지 못하도록 할 때 영

업비밀로 추정된다 (제2조 C : 20-1)고 규정한 다음 (20-2)에 절도죄의 등급을 규정하고 있다.

○ 컴퓨터 관련 범죄를 처벌하고 있는 주형법

플로리다주 형법에서는 영업비밀의 절도, 횡령 및 불법복사에 대한 특별한 규정 없이 일반 절도죄의 범주내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 컴퓨터 관련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영업비밀의 절도죄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즉, 영업비밀의 절도에 컴퓨터를 이용하면 컴퓨터 범죄와 영업비밀의 절도죄에 의해 처벌된다.

이와 같은 컴퓨터 범죄의 처벌 규정은 입법취지 및 정의, 지적소유권에 대한 범죄, 컴퓨터 장비 및 용품에 대한 범죄, 컴퓨터 사용자에 대한 범죄 등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② 연방형법

일반적으로 영업비밀의 절도죄에 대한 처벌은 주형법이 적용되고 연방형법은 제한적으로만 적용되고 있다.

영업비밀에 관련된 연방형법 규정을 살펴보면 연방장물법, 우편사기규정, 장물수령규정, 영업비밀법 등이 있다.

#### ○ 연방 장물법

5.000달러 이상의 물품, 제품 및 상품을 절도, 횡령한 것임을 알면서 주의 통상 또는 외국과의 통상에서 운송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적용대상은 영업비밀이 담긴

유체물이 절도되어 주문 또는 외국에 수송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 우편 사기 규정  
타인을 기만하기 위한 우편사용을 금하고 있는 규정이다.

적용대상은 영업비밀의 절도과정에서 합중국 우편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 적용된다.

#### ○ 장물수령규정

5,000달러 이상의 물품, 제품, 상품이 장물임을 알면서 수령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적용대상은 영업비밀이 담긴 물품의 수령에 적용된다.

#### ○ 영업비밀법

합중국 형법에는 영업비밀이라

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은 정부의 관리가 비밀정보를 허락없이 공개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공개가 금지된 비밀정보에는 공무원이 직무상 지득한 민간기업의 영업비밀도 포함되어 있다.

## 세계 메모리 반도체 기술경쟁 심화

세계 메모리 반도체 기술경쟁이 기가(1기가=10억) D램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일본 최대의 반도체 산업체인 NEC사는 1기가 비트급 실험용 D램 소자를 개발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1기가 D램은 오는 '98년쯤 상용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256메가 D램의 다음 세대 메모리 반도체로 기대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꿈의 반도체」에 속한다.

1기가 D램은 256메가 D램의 4배 용량으로 영자신문의 약 4천 쪽(한자를 포함한 한글신문 1천 쪽), 음성 4시간, 동화상 15분 분량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메모리 반도체 용량이 이같은 기가급 시대에 진입할 경우 그 엄청난 정보처리 용량의 확대에 따라 컴퓨터 정보통신 멀티미디어 관련산업 또한 현재의 경박단소화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일대 혁신을 맞게 된다.

워크스테이션 이상의 성능에

맞먹는 휴대용 PC, 첨단 기능의 휴대용 정보단말기, 손목시계형 휴대전화기 등이 실용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NEC 측은 실험용 1기가 D램을 발표하면서 오는 '98년 상용화의 직전단계인 엔지니어링 샘플을 출하하고 2000년대에 양산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업체의 이번 발표가 꿈의 1기가 D램 개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NEC가 발표한 실험용 샘플은  $2.6 \times 3.6\text{cm}$ 의 칩크기에 0.26미크론(1미크론=1천분의 1mm) 굵기의 회로로 약 11억개의 단위소자(Cell)를 집적시킨 것이다.

우선 11억개의 전체 단위 소자가 완전히 작동하지 않으며 칩크기도 더욱 축소돼야 한다.

또 칩을 구현하는 회로의 굵기(회로선폭)도 256메가 D램 수준의 0.25미크론에 머물고 있다.

1기가 D램의 일반적인 회로선폭은 0.1미크론 대로 낮아져야 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지적

하고 있다.

이같은 설계기술과 함께 실제로 칩을 생산할 수 있는 양산기술의 개발도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업계전문가들은 이같은 기술적 난제에도 불구하고 NEC의 1기가 D램 발표가 연구논문 수준의 것이라 하더라도 세계 관련업체에 자국 기술의 우위를 과시한 효과를 지니고 있다.

일본은 256메가 D램에 있어서도 지난해 삼성전자의 완전동작 샘플인 워킹다이 개발보다 2년 앞선 지난 92년 연구논문 차원의 실험용 칩을 발표한 바 있다.

삼성전자, 현대전자, LG반도체 등 국내 메모리 반도체 3사는 기술적 예측 과정을 거쳐 지난해부터 기가D램을 반도체 개발에의 도전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256메가 D램 개발과 마찬가지로 NEC의 실험용 칩발표에 이어 진정한 1기가 D램 개발을 목표로 한 한·일간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